

수 신 자 내부결재

(경 유)

제 목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 제정(안)

기존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」폐지 및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내규」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## 1. 관련 근거

- 가. 여성폭력방지기본법 (2019.12.25. 시행)
- 나. 서울특별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(2021.4.7. 시행)

## 2. 제정이유

- 가.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의 중요성 증가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 강화
- 나.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반영
- 다. 서울시 성비위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기존 지침 폐지 및 내규 제정으로 규범 강화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: 본칙 19개 조항 및 부칙
- 나. 주요내용
  - 1)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
  - 2)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·상급자·구성원의 책무
  - 3)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
  - 4) 고충상담창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5) 사건의 조사,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,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  - 6) 고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7) 조사의 종결, 징계, 재발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## 4. 행정사항

- 가. 대표이사 결재완료일부터 내규 시행 및 기존 지침 폐지
- 나. 차기 이사회 보고안건으로 상정 예정

